

2 - 11	사무실 등록 요건에서의 소유권 유무의 판단		
질의 일자	2017-06	회신 방법	국민신문고 민원
질의 내용			
○ 법인 사무실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인도된 이후 조합과 임시 사용 가능 약약을 수령할 경우 사무실 보유조건이 인정되는지 여부			
회신 내용			
○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[별표3]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·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. ○ 적법한 사무실인지 여부는 상시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, 공사업자가 사무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. ○ 따라서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무실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.			